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5.

제안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이 탄소중립 실현,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의2제1항 단서).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”를 “제1호 및 제2호는”으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,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탄소중립의 실현,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해당 인공구조물등이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에 활용”를 “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9조의2(원상회복)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, 시설물, 그 밖의 장비(이하 “인공구조물등”이라 한다)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19조의2(원상회복)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, 시설물, 그 밖의 장비(이하 “인공구조물등”이라 한다)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</u>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<u>경우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19조의2(원상회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 <u>제1호 및 제2호는</u> ----- ----- ----- <u>경우에,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탄소중립의 실현,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</u>

1.2. (생략)
<신설>

<신설>

1.2. (현행과 같음)
3. 해당 인공구조물
등이 「이산화탄
소 포집·수송·
저장 및 활용에
관한 법률」 제2
조에 따른 포집,
수송, 저장 또는
활용시설로 전환
하여 사용되는 경
우

4. 해당 인공구조
물등이 「신에너
지 및 재생에너
지 개발·이용·
보급 촉진법」
제2조에 따른 신
에너지 또는 재
생에너지를 이용
하는 발전사업에

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요건을 충족
하여 산업통상부
장관의 승인을 받
은 경우에-----
-----.

1. ~ 3. (개정안과
같음)

4. 「해상풍력 보
급 촉진 및 산업
육성에 관한 특
별법」 제2조제1
호에 따른 해상
풍력발전사업 관
련 시설로 전환
하여 사용-----
--

<u><신 설></u> ② · ③ (생 략)	<u>활용 되는 경우</u> <u>5. 그 밖에 대통령</u> <u>령으로 정하는 에</u> <u>너지 · 자원 개발</u> <u>사업으로 활용될</u> <u>필요가 있는 경우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 음)	5. (개정안과 같음) ② · ③ (개정안과 같음)
--	---	--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5.

발 의 자 : 박성민 · 엄태영 · 구자근
정동만 · 윤영석 · 김기현
이상휘 · 강승규 · 김승수
이철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다만,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(CCUS)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(해상풍력 등)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이 탄소중립 실현,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”를 “제1호 및 제2호는”으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,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탄소중립의 실현,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「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포집, 수송, 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
4.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원상회복)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, 시설물, 그 밖의 장비(이하 “인공구조물등”이라 한다)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19조의2(원상회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1호 및 제2호는----- -----경우에,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<u>탄소중립의 실현,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</u> ----- -.
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·2. (현행과 같음) 3.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「 <u>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에 따른 포집, 수송, 저장 또는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· ③ (생 략)	<u>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</u> <u>는 경우</u> 4. 「<u>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</u> <u>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 <u>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</u> <u>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</u> <u>사용되는 경우</u> 5.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</u> <u>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